

■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40호서식(4)] <개정 2018. 3. 21.>

(3쪽 중 제1쪽)

**(년 귀속) 종합소득세·지방소득세
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
(단일소득-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)**

관리번호	-			거주구분 내·외국인	거주자1 /비거주자2 내국인1 /외국인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거주지역	거주코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⑥ 전자우편주소 ⑦ 주소지 전화번호 ⑧ 사업장 전화번호 ⑨ 휴대전화번호 ⑩ 신고유형 ⑪ 주계 - 단순율 ⑫ 기장의무 ⑬ 간편장부대상자 ⑭ 소득구분 ⑮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⑯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⑰ 업종코드 ⑱ 단순경비율(%) ⑲ 일반율 ⑳ 자가율 ㉑ 신고구분 ㉒ 정기신고 , ㉓ 수정신고 , ㉔ 기한후신고 ㉕ 환급금 계좌신고 ㉖ 금융기관/체신관서명 ㉗ 계좌번호 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2">㉙ 총수입금액: 매출액을 적습니다.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㉚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: ㉙ 총수입금액 × ㉘ 단순경비율(%)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㉛ 종합소득금액: ㉙ - ㉚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㉜ 소득공제: 소득공제명세(㉝~㉞)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.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㉟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</td> <td colspan="2">㉟ 인적공제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6" style="vertical-align: top; width: 10%;">소 득 공 제 명 세</td> <td>㉟ 관계</td> <td>㉟ 성명</td> <td>㉟ 주민등록번호</td> <td>㉟ 구 분</td> <td>㉟ 인원</td> <td>㉟ 금 액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6"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기본 공제</td> <td>㉟ 본인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㉟ 배우자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㉟ 부양가족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㉟ 경로우대자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㉟ 장애인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6"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추가 공제</td> <td>㉟ 부녀자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㉟ 한부모가족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㉜ 기부금(이월분) 소득공제: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.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㉜ 연금보험료공제: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.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㉜ 개인연금저축공제: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%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㉜ 과세표준: ㉟ - ㉜ ("0"보다 적은 경우에는 "0"으로 합니다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㉜ 세율: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.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㉜ 산출세액: ㉜ × ㉟ - 누진공제액(3쪽 작성방법 참고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㉜ 세액공제: 세액공제명세(㉝~㉞)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㉟ 전자예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: 전자예산서 발급건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.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vertical-align: top; width: 10%;">세 액 공 제 명 세</td> <td rowspan="3"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㉟ 자녀 세액 공제</td> <td colspan="2">기본공제 자녀(입양자, 위탁아동 포함) ※ 2명 미하: 1명당 15만원, 자녀 2명 초과: 30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</td> <td colspan="2"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명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6세 미하 자녀(6세 미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) ※ 2명: 15만원, 2명초과: 15만원 + 2명 초과 1명당 15만원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출산·입양 세액공제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㉜ 연금계좌세액공제: 연금계좌 납입액(400만원 한도, 단,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)의 12%(단,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미하자는 15%)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액 대상금액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/tbody></table>						구 분		금 액		㉙ 총수입금액: 매출액을 적습니다.				㉚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: ㉙ 총수입금액 × ㉘ 단순경비율(%)				㉛ 종합소득금액: ㉙ - ㉚				㉜ 소득공제: 소득공제명세(㉝~㉞)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.				㉟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		㉟ 인적공제		소 득 공 제 명 세	㉟ 관계	㉟ 성명	㉟ 주민등록번호	㉟ 구 분	㉟ 인원	㉟ 금 액	기본 공제	㉟ 본인					㉟ 배우자					㉟ 부양가족					㉟ 경로우대자					㉟ 장애인					추가 공제	㉟ 부녀자					㉟ 한부모가족					㉜ 기부금(이월분) 소득공제: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.						㉜ 연금보험료공제: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.						㉜ 개인연금저축공제: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%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						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						㉜ 과세표준: ㉟ - ㉜ ("0"보다 적은 경우에는 "0"으로 합니다)						㉜ 세율: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.						㉜ 산출세액: ㉜ × ㉟ - 누진공제액(3쪽 작성방법 참고)						㉜ 세액공제: 세액공제명세(㉝~㉞)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						㉟ 전자예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: 전자예산서 발급건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.						세 액 공 제 명 세	㉟ 자녀 세액 공제	기본공제 자녀(입양자, 위탁아동 포함) ※ 2명 미하: 1명당 15만원, 자녀 2명 초과: 30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		명		6세 미하 자녀(6세 미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) ※ 2명: 15만원, 2명초과: 15만원 + 2명 초과 1명당 15만원		출산·입양 세액공제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		㉜ 연금계좌세액공제: 연금계좌 납입액(400만원 한도, 단,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)의 12%(단,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미하자는 15%)		세액 대상금액			
구 분		금 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㉙ 총수입금액: 매출액을 적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㉚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: ㉙ 총수입금액 × ㉘ 단순경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㉛ 종합소득금액: ㉙ - ㉚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㉜ 소득공제: 소득공제명세(㉝~㉞)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㉟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		㉟ 인적공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 득 공 제 명 세	㉟ 관계	㉟ 성명	㉟ 주민등록번호	㉟ 구 분	㉟ 인원	㉟ 금 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본 공제	㉟ 본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㉟ 배우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㉟ 부양가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㉟ 경로우대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㉟ 장애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가 공제		㉟ 부녀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㉟ 한부모가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㉜ 기부금(이월분) 소득공제: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㉜ 연금보험료공제: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㉜ 개인연금저축공제: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%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㉜ 과세표준: ㉟ - ㉜ ("0"보다 적은 경우에는 "0"으로 합니다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㉜ 세율: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㉜ 산출세액: ㉜ × ㉟ - 누진공제액(3쪽 작성방법 참고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㉜ 세액공제: 세액공제명세(㉝~㉞)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㉟ 전자예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: 전자예산서 발급건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세 액 공 제 명 세	㉟ 자녀 세액 공제	기본공제 자녀(입양자, 위탁아동 포함) ※ 2명 미하: 1명당 15만원, 자녀 2명 초과: 30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		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6세 미하 자녀(6세 미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) ※ 2명: 15만원, 2명초과: 15만원 + 2명 초과 1명당 15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출산·입양 세액공제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㉜ 연금계좌세액공제: 연금계좌 납입액(400만원 한도, 단,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)의 12%(단,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미하자는 15%)		세액 대상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 (재활용품)]

(3쪽 중 제2쪽)

구 분		금 액
세 액	⑬ 기부금세액공제: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자의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의 15% (2천만원 초과분은 30%)	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
공 제	⑭ 표준세액공제: 7만원	
명 세	⑮ 납세조합공제: 납세조합영수증상의 ⑯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.	
	⑯ 전자신고세액공제: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.	
	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: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100/110을 세액공제합니다.	
	⑲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.	
	⑳ 결정세액: ⑭ - ⑯ - ⑰ ("0"보다 적은 경우에는 "0"으로 합니다)	
	㉑ 가산세액: 가산세액명세(㉒~㉓)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	

구 분		계산기준	기준금액	가산세율	가산세액
㉑ 무 신 고	부 정 무 신 고	무신고납부세액		40/100 (60/100)	
		수 입 금 액		14/10,000	
	일 반 무 신 고	무신고납부세액		20/100	
		수 입 금 액		7/10,000	
가 산 세 액 계 산 명 세	㉒ 과 소 신 고	부 정 과 소 신 고	과소신고납부세액	40/100 (60/100)	
		수 입 금 액		14/10,000	
	일 반 과 소 신 고	과소신고납부세액		10/100	
		미 납 부 (환 급) 세 액	()	3/10,000	
㉓ 납부(환급)불성실	보 고 불 성 실	미제출(불명)	지급(불명)금액	1/100	
		지 연 제 출	지연제출금액	0.5/100	
	공동사업장 등 륙 불 성 실	미 등 록 · 허 위 등 록	총 수 입 금 액	0.5/100	
		순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	총 수 입 금 액	0.1/100	
	㉔ 무 기 장	장 산 출 세 액		20/100	
㉕ 신용카드거부	거 래 거 부	· 불 성 실 금 액		5/100	
	거 래 거 부	· 불 성 실 건 수		5,000원	
㉖ 현금영수증 미 발 급	미 가 맹	수 입 금 액		1/100	
	미 발 급	· 불 성 실 금 액		5/100	
	미 발 급	· 불 성 실 건 수		5,000원	

㉗ 총결정세액: ㉘+㉙

기납부 세 액	㉚ 중간예납세액
	㉛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
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: ㉘-㉚-㉛	

④ 지방소득세액의 계산

㉟ 과세표준: 종합소득세의 ㉟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뺀다 적습니다.

㉟ 세율: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.

㉟ 산출세액: ㉟ × ㉟ - 누진공제액(3쪽 작성방법 참고)

㉟ 세액공제 · 감면: (㉟ + ㉟) × 10%

㉟ 가산세액: (3쪽 작성방법 참고)

㉟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: ㉟ × 10%

㉟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: ㉘-㉚+㉛-㉟

신고인은 「소득세법」 제70조 및 「지방세법」 제95조와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3에 따른 기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

세무서장	년 월 일	신고인	(서명 또는 인)
첨부서류	1. 장애인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정하며,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) 2. 기부금명세서(별지 제4호서식)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(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3. 가족관계등록부 1부(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,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*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.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 (재활용품)]

작성방법

1. ⑩ 단순경비율(※) 적용대상자(구하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전산으로 적용 있습니다): 계속사업자는 '⑩' 요건을 충족(2019년 귀속 이후부터는 '⑩'·'⑪' 요건 모두 충족)하는 사업자, 신규사업자는 '⑩'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
 * 다만, 의사, 변호사, 세무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사업자 등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43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는 2008. 1. 1.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.
- ⑪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
 가. 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도매업, 소매업, 부동산매매업,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: 6천만원
 나.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, 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, 건설업, 운수업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: 8천600만원
 다. 부동산임대업, 부동산관련 서비스업, 임대업, 서비스업(인적용역 등): 2천400만원
- ⑫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6조제6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
2. ⑬ 금융기관명/체신관서명란 및 ⑭ 계좌번호란: ⑮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.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(변경)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3.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: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 가. 관계코드: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.
 스득자 본인=0, 스득자의 직계존속=1, 배우자의 직계존속=2, 배우자=3, 직계비속 중 자녀·입양자=4, 직계비속 중 자녀·입양자 외(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)=5, 형제자매=6, 수급자=7, 위탁아동=8
 나. 내외국인코드: 내국인은 "1", 외국인은 "2"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4. 기본공제: 본인과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(해당인원×150만원)을 공제합니다.
 가. 배우자: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)
 나. 부양가족: 본인과(배우자 포함) 생계를 같이 하고, 연간소득금액이 1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만원) 미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,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.
- 1) 부모,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
 - 2)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미하인 자
 (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)
 - 3)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
 - 4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수급자
 - 5) 「마동복지법」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
5. 추가공제: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.
- ⑯ 경로우대자(만 70세 이상) 100만원 ⑰ 장애인 200만원
 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미하인 자로 한정)
 ⑲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(⑯과 중복인 경우 ⑯을 적용)
6. ⑳ 기부금(미월분) 공제: 기부금명세서(별지 제46호서식)를 먼저 작성하고,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.
7. ㉑ 세율란 및 ㉒ 산출세액란: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(㉓)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, [과세표준(㉓)×세율(㉑)–누진공제액]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.

세율표

과세 표준	2017년				과세 표준	2018년				
	종합소득세		지방소득세			종합소득세		지방소득세		
	세율	누진공제액	세율	누진공제액		세율	누진공제액	세율	누진공제액	
1,200만원 이하	6%	0.6%			1,200만원 이하	6%	0.6%			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5%	108만원	1.5%	108천원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5%	108만원	1.5%	108천원	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4%	522만원	2.4%	522천원	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4%	522만원	2.4%	522천원	
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6%	1,490만원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6%	1,490만원	3.5%	1,490천원	
1억 5천만원 초과 5억 원 이하	36%	1,940만원	3.8%	1,940천원	1억 5천만원 초과 5억 원 이하	36%	1,940만원	3.8%	1,940천원	
5억 원 초과	40%	2,940만원	4.0%	2,940천원	5억 원 초과	40%	2,540만원	4.0%	2,540천원	

8. ㉓ 기부금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(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,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)만 가능합니다.
9. ㉔ 무신고가산세·㉕ 과소신고가산세: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.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.
10. ㉖ 무기장가산세란: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20%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(소득세법 제81조제7항).
11. 세법에 따른 제출·신고·가입·등록·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미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%를 감면하여 적습니다.
12. ㉗ 원천징수세액란: 인적용역(보험설계사, 외판원 등)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.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는 지급총액이 가장 큰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13. 지방소득세 : ㉘ 산출세액란은 위 세율표에서 [과세표준(㉓)×세율(㉑)–누진공제액]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고, ㉙ 가산세액란은 「지방세법」 제99조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,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